

신용카드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와는 사용 가능 가맹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않고** 분실하는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Q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지난 달 이월금액 50만원, 이번 달 30만원(일시불) 이용 시 약정결제비율(50%), 수수료율(연 17%)로 가정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총 406,989원(①+②)이며, 다음 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40만원(③)입니다.

① 리볼빙 수수료 : 6,986원(전월 잔액(50만원)×수수료율(17%)×30일/365일)
② 청구되는 원금 : 40만원[50만원(이월금액)+30만원(당월 이용액)]×50%
③ 이월잔액: 40만원(80만원(이월금액+당월 이용액)-40만원(청구원금))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고객센터(1899-7771)**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 품 명	신세계 BC 바로 콰트로 플러스		
연 회 비	국내전용(BC)	해외검용(VISA)	
	5,000원 (기본연회비 0원 + 제휴연회비 5,000원)	5,000원 (기본연회비 0원 + 제휴연회비 5,000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용한도의 경우 최종 확정후 안내예정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이용한도의 경우 최종 확정후 안내예정

※ 신용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해당 소비자의 한도가 확정된 시점 이후 기재(계약체결 시)

청구할인 서비스

카테고리	대상 가맹점	할인율
쇼핑	신세계백화점(문화센터 포함), 이마트(에브리데이, 트레이더스 포함), 신세계면세점	5%
교통	모든 주유소(LPG 포함), 전기차 충전소 업종,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 업종	4%
온라인몰	SSG.COM,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7%
생활	병원/약국, KT/SKT/LGU+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5%
커피/외식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폴바셋, 아웃백	10%

※ 신세계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결제에 한함

- 단, 문화센터의 경우 온라인 결제 포함

※ 모든 주유소: 기타연료, 유류판매 업종 제외

※ 병원/약국: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치과

- 오프라인 매장 결제 건에 한함

- 동물병원, 건강진단, 산후조리원 등 기타의료기관 제외

※ 휴대폰요금: 대상 통신사에 자동납부 신청 후 결제된 건에 한함(월 1회)

※ 공통: 백화점/쇼핑몰/할인점 내 임대매장 이용금액 제외

월 할인 한도

전월 실적	카테고리별 할인한도	통합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	10,000원	15,000원
50만원 이상	15,000원	25,000원
70만원 이상	20,000원	35,000원
120만원 이상	30,000원	55,000원

서비스 제공 조건

-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카테고리 별 할인 한도 및 월 통합 할인 한도는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할인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전월 실적 및 할인 한도는 본인 및 가족카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청구할인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업종/가맹점 기준을 따르며, 서비스 할인 금액은 지정한 카드 결제일에 차감됩니다.
- 카드 승인 취소 시 매출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 실적에서 차감되며, 할인 적용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 처리됩니다.
- 매출 취소로 인한 할인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할인 한도는 매출이 정상 처리되는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카드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할인 한도가 제공됩니다.
- 전월 실적 제외 항목
 - 쇼핑, 교통 카테고리 사용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제수수료/이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 금액, 아파트 관리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 등록금,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 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상품권 구매금액
- 청구할인 제외 항목
 -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상품권 구매금액

국제 브랜드 서비스

-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서비스

- 신세계 백화점 제휴 서비스 및 신세계 포인트 적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세계 백화점 홈페이지 및 신세계 포인트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 이용 안내

- 가족카드 연회비는 각 상품 별 연회비 부과 기준을 따르며 가족카드 기준 5매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가 본인카드와 동일 상품일 경우(상품 별 별도의 예외 조건이 없는 경우) 가족카드 이용금액 및

한도는 본인카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가족카드 명의자(카드 전면 또는 후면에 표기된 이름)의 이용금액에 포함되며, 연간 소득금액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알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SMS 서비스 신청 ARS(1588-4466)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본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함께 본인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 가족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는 본인회원에게 합산되며, 대여 및 양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 변동(이혼, 사망, 파양 등) 시 본인 회원이 고객센터(1899-7771)를 통해 가족카드 정지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가 변동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회원에게 의도하지 않은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가 한도 감액/정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의 특성

-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갱신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연11%~18.5%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카드사가 미리 부여한 한도(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최대 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 ※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 발생	연7.9%~19.9%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	연7.9%~ 19.9%

□ 금리의 변동 여부

- 회원이 할부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용개월,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5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 %
- (거래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국제브랜드 수수료 : 국제브랜드사(VISA)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1.1) %
- (거래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수수료

- 이용수수료 : (800원 ~ 1,300원)

6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구분	청구단위	연회비
기본연회비	회원별/카드별	신용카드 상품별로 상이 (해당 상품의 연회비는 상품안내장 참고)
제휴연회비	카드별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1만원

* 카드등록일 : 2021.03.02일, 카드탈퇴일 : 2021.05.10일

● 반환연회비 = (2만원 - 1만원) X (연회비만기도래일:'22.03.01'-'21.05.10':295일) / 365일 : 8,082원

※ 윤년인 경우 1일 추가 계산하여 금액 산정함.

- ☐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7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입니다.
-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 ☐ 본 신용카드 상품의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상세내용 및 제공 조건은 “상품안내장”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p)로,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0%) 이내로 합니다.
 - ☐ 다만,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 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이용 정지, 카드이용 한도감액, 카드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 연체이자 부담 /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1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위험성 및 예시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예시)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10만원

구분	계산방법	금액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6,986원+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6,986원+10만원 = 506,986원

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x 최소결제비율	(50만원+30만원) x 10% = 8만원
리볼빙수수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x 당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x 17% x 30일/365 =6,986원
리볼빙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x 약정결제비율	(50만원+30만원) x 50% = 40만원
※ 당월에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위법계약해지권

-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5 금리인하요구권

-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 시) : ■ 대상 ☐ 비대상
- ☐ 여전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여전법」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은 비대면채널(예: 콜센터, 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신청 시기, 횟수제한 없음)
여전사는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전사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여전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신청:**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카드사 앱, 콜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 더보기 > 메뉴 검색 > '카드해지' 또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 더보기 > 바로카드 관련 메뉴 > 정보변경 관련 메뉴 > 카드해지
 -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 마이BC > 카드정보 > 카드해지
 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 **[콜센터]** 1899-7771번 전화 > 상담원 연결
 콜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9시~18시까지 가능
- ☐ **해지 처리 :**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해지 또는 탈퇴가 되지 않는 일부 경우에는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비씨카드 **홈페이지** (www.bccard.com) 또는 **고객센터(1899-777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방법

· 바로카드 고객센터 : 1899-7771

· 바로카드 홈페이지/모바일웹/APP : 고객센터 > 고객상담 > E-mail 상담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안내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 드리나,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 당 여 부	☐	본인은 비씨카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본 설명서의 <상품안내장>에 기재된 연계·제휴서비스 및 연회비 관련 사항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용카드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제40조)
- ◆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제5조)
-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제40조)
-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신용카드 약관의 주요 내용]

- ◆ (부가서비스)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3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5조)
- ◆ (연회비 청구)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제6조)
- ◆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연회비 부과기간(1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돌려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제6조의 2)
- ◆ (이용한도)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되며,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 ◆ (부정사용책임)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제40조, 제41조)

※ 신용카드 발급 계약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바로카드 고객센터(1899-7771)** 또는 **홈페이지(www.bccard.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